

부속서 III
투자예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캄보디아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캄보디아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4개월의 기간 동안 이 목록에 규정된 대로 유보항목을 추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비합치 조치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이 목록의 그러한 모든 추가, 철회 또는 수정을 기탁처를 통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그러한 추가, 철회 또는 수정은 그러한 통보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3. 이 목록의 각 유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산업, 생산품 및 활동을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 제3차 개정안에 따라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정부수준 요소의 목적상, 국가 행정부는 중앙정부를 지칭하고 하위 국가 행정부는 수도/주, 구(Khans)/시/군 및 동(Sangkats)/면(Communes)을 지칭한다.
- 마. **의무의 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유보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의무를 지칭한다.
- 바. **조치내용**은 유보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그리고
-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지칭하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4.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주해는 이 목록의 캄보디아 유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p>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는 헌법, 토지법 및 관련 법과 규정에서 토지 소유권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p>외국인은 집합건물에서 2 층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진다. 외국인은 1 층과 지하층을 소유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국경으로부터 30 킬로미터 내 및 캄보디아 정부에 의하여 정의된 그 밖의 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특구, 중요한 공회 및 캄보디아 정부가 정의한 그 밖의 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은 제외된다.</p> <p>접경 지역의 토지는 접경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임대될 수 없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왕국 헌법 제44조 - 2001년 토지법 - 2010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공에 관한 법 - 2006년 민사소송법 - 2007년 민법 - 장기 임대 또는 경제적 토지 양허에 대한 담보대출 및 권리 이전에 관한 2007년 8월 29일자 시행령 제114 ANKR. BK호 - 2015년 11월 17일자 정부 회람 제08 SR호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고용 정책의 채용 및 투자자의 의무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p>고용인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캄보디아인에게 선호를 부여해야 한다(1997년 노동법 제263조). 투자자는 캄보디아인 직원을 고위경영진 수준으로 승진시킬 의무를 지니며 이는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p> <p>각 기업에서 고용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최대 비율은 캄보디아인 피고용자의 총수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10 퍼센트 비율은 3 개 피고용인의 범주로 구분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직 피고용인: 3 퍼센트 2. 피고용인 또는 기술 근로자: 6 퍼센트 3. 피고용인 또는 비기술 근로자: 1 퍼센트 <p>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공장 소유자는 캄보디아인 엔지니어와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년 캄보디아왕국 투자법 - 2003 년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 2006 년 공장 관리 및 수공예에 관한 법 및 2014 년 개정법 제 10 조 -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 년 9 월 27 일자 시행령 제 111 ANK/BK 호 - 외국인 인력 이용에 관한 2001 년 7 월 16 일자 사회·노동·직업훈련 및 청년재활부 부령 제 162 MOSALVY 호 - 외국인 노동 고용에 관한 2014 년 8 월 20 일자 부령 제 196 K.B/BR K 호 - 2006 년 민사소송법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내국민 대우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시장에서 지분증권에 대한 비거주자의 국내 매수의 경우, 각 청약 지분의 20퍼센트는 캄보디아인 투자자를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캄보디아인과 비캄보디아인 투자자 모두를 위하여 유보된다. 다만, 위의 배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 위원장은 재배정을 정의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청약 증권의 100퍼센트를 매수할 수 없다(최대 80퍼센트). - 기업 서기는 캄보디아 국민이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캄보디아 국민과 다른 업무 경력 조건을 갖춘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비정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 - 2020년 정부 증권에 관한 법 - 2009년 비정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 2009년 비정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65조 - 2015년 시행령 제005/15호의 제36조 -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시행령 - 상장 국영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2010년 12월 15일자 부령 제031/10호의 제12조 및 제23조 - 지분증권 공모에 관한 부령 - 채무증권 공모에 관한 부령 - 파생상품 거래 면허 및 감독에 관한 부령 - 거래 체계에 관한 지침 - 고객 자금 계좌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고객 자금의 예치·인출·결제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 - 국가 경제 개발 정책 - 주식시장 개발 정책 및 전략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성 물질의 생산 또는 가공: 1961 년 3 월 30 일 뉴욕에서 채택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이하 이 유보항목에서 “1961 년 협약”이라 한다) 및 1971 년 2 월 21 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이하 이 유보항목에서 “1971 년 협약”이라 한다) 1 등급, 2 등급 및 3 등급
산업분류	:	ISIC 2429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내국민 대우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 등급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는 캄보디아에서 금지되나, 2 등급 및 3 등급 완제품 ¹ 의 제조만 캄보디아 보건부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허용된다.
조치근거	:	- 1997년 약물통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1961년 협약 및 1971년 협약 1등급, 2등급 및 3등급 -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 9월 27일자 시행령 제111 ANK/BK호

¹ 2 등급(1961 년 협약 표 1 및 표 2):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아세틸메타돌, 알펜타닐, 알릴프로딘, 알파메프로딘, 알파메타돌, 알파-메틸티오펜타닐, 알파프로딘, 아닐레리딘, 벤제티딘, 벤질모르핀, 베타세틸메타돌, 베타메프로딘, 베타메타돈, 베타프로딘, 베지트라미드,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케토베미돈, 클로니타젠, 레보모라미드, 레보페나실 모르핀, 레보르파놀, 메타조신, 메타돈, 메타돈, 시아노-4 디메틸아미노-2 디페닐-4, 4 부탄, 중간체, 메틸테소르핀, 메틸디히드로모르핀, 메토폰, 모라미드, 모르페리딘, 모르핀, 모르핀 메토브로미드 및 그 밖의 5 가 질소 모르핀 부산물, 미로핀, 니코코딘, 니코디코딘, 니코모르핀, 노라시메타돌, 노르코데인, 노르레보르파놀, 노르메타돈, 노르모르핀, 노르피파논, N-옥시모르핀, 아편, 옥시코돈, 옥시모르핀, 페티딘, 메클로쿠알론, 메탐페타민, 메타쿠알론, 메틸페니데이트, 펜시클리딘, 펜메트라진,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세코바르비탈.

3 등급(1971 년 협약 표 3): 아모바르비탈, 부프레노르핀, 부탈비탈, 카틴, 시클로바르비탈, 글루테티미드,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1971 년 협약 표 4): 알로바르비탈, 알프라졸람, 암페프라논, 바르비탈, 벤즈페타민, 브로마제팜, 부토바르비탈, 카마제팜, 클로리아제프록사이드, 클로바잠, 클로나제팜, 노르다제팜, 옥사제팜, 옥사졸람, 페몰린, 펜디메트라진, 페노바르비탈, 펜터민, 피나제팜, 파프라돌, 프라제팜, 피로발레론, 섹부타바르비탈, 테마제팜, 트리졸람 및 비닐비탈.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독성 화학물질, 농약이나 살충제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그 밖의 상품의 생산
산업분류	:	ISIC 2421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독성 화학물질 및 농약이나 살충제의 생산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p>국제 규정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그 밖의 상품의 생산은 모든 투자자에게 금지된다.</p> <p>캄보디아에서 금지된 살충제 목록²에 포함되어 있는 살충제의 생산, 가공 및 등록은 금지된다. 다음의 경우, 그 밖의 살충제의 생산, 가공 및 등록도 거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에 첨부된 정보와 데이터가 허위인 경우 2. 살충제가 공중보건에 매우 유독하거나 그 살충제의 사용이 이익보다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3. 살충제가 식물 독성 생산품으로, 작물 수확량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는 경우 4. 살충제의 효과성이 적시된 것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 5. 살충제가 작물과 환경에 있는 잔류성 독성 잔여물을 포함하는 경우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2월 15일자 농림수산부령 제598 BRK.KSK호 - 2012년 11월 26일자 농림수산부령 제484 BRK.KSK호 -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 9월 27일자 시행령 제111 ANK/BK호 - 2012년 살충제 및 비료 관리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16조

² 금지된 살충제 목록은 「2012년 11월 26일자 농림수산부령 제 484 BRK.KSK 호 부속서 1」에 기재되어 있다.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종자 관리 및 식물 육종가의 권리
산업분류	:	ISIC 0140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외국인은 다음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식물 육종가의 권리 또는 관련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캄보디아에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 또는 2. 1961년 파리에서 채택된 개정된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의 서명국 또는 식물품종 보호에 대하여 캄보디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서 영구 거주를 가진 외국인
조치근거	:	- 2008년 종자 관리 및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내륙 및 해양 어업
산업분류	:	ISIC 0500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다음의 활동은 모든 투자자에게 금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어기 동안의 어로(중규모 및 산업적 어로) 2. 어업에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도록 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산청에 특별 허가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한 어업 보존 구역에서의 모든 어로 활동 3.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법 집행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 보존 구역에서의 우회 항행 또는 어떠한 활동 4. 수산청 상주자를 위하여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업 보존 구역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미만의 신규 정착 5. 어업 영역에서 금지된 장비³를 사용하는 모든 어로 활동 6. 어로 목적의 감전 장치, 모든 형태의 모기장 어구, 기계식 모터 외손반디그물, 내륙 저인망 어선의 생산, 구매, 판매, 운송 및 보관, 그리고 7. 2006년 어업법으로 금지된 그 밖의 활동 <p>외국인은 소규모 또는 가족 규모의 어로를 향유할 수 없다.</p> <p>외국인의 어로 개발 또는 양식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농림수산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p> <p>어획물의 환적 및 외국 어선의 정박은 수산청이 정한 조건에 따른다.</p> <p>해양 어업 영역에서 어로가 허용된 외국 어선은 캄보디아 해양 어업 영역에 기항하기 전에 수산청에 알린다.</p> <p>오직 캄보디아(크메르) 국민만이 수산 자원의 관리, 보존,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자신의 현지에 어로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p>

³ 금지된 어구는 「2006년 어업법」 제 20 조에 기재되어 있다.

조치근거

:

- 2006년 어업법
- 어로 공동체 관리에 관한 2007년 3월 20일자 시행령 제25 ANK.BK호

분야	:	임업
하위 분야	:	임업 및 벌목업: 산림개발사업
산업분류	:	ISIC 0200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내국민 대우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임업과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p>2002년 임업법 제8장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에 규정된 모든 활동은 금지된다. 자연보호구역은 다음의 목적으로 1996년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의 방지·감소·통제를 통하여 환경 품질 및 공중보건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 - 캄보디아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 - 캄보디아의 천연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 개발, 관리 및 이용을 보장하는 것 - 대중이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 환경에 피해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억제하는 것 <p>고무 및 유칼립투스 농장을 제외한 영구산림보존지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캄보디아의 조치는 생물의 다양성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 또는 투자는 제안된 투자를 설립하기 전에, 그러한 투자를 위하여 1996년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 및 환경영향평가절차(EIAP)에 관한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제안된 투자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사 기준 및 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임업법 - 1996년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 - 산림 무정부 상태 관리 및 제거에 관한 1999년 1월 25일자 정부 선언 -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 9월 27일자 시행령 제111 ANK/BK호

분야	:	광업
하위 분야	:	모래 개발 및 기름·가스 추출 및 정제를 포함하는 광업
산업분류	:	ISIC 1410, 1110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캄보디아 담수 및 해수 내 모든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을 위한 모든 종류의 모래 개발은 금지된다.</p> <p>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캄보디아에서 수행되는 모래 개발 및 기름·가스 활동을 포함하는 광업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p>모래 개발 및 기름·가스 활동을 포함하는 광업에서의 투자 면허가 요구되며 관방부, 광업에너지부 및 관련 규제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른다.</p> <p>광물 및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관방부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p> <p>모든 유형의 천연자원은 수출이 금지된다. 광물 자원은 광물 자원을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국내 공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전된다. 완제품으로 한정하여 수출이 허용된다.</p> <p>석유 계약업자는 (1) 캄보디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캄보디아 국민의 고용을 우선시하며, 그리고 (2) 국내 노동력, 상품 및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의무를 가진다.</p> <p>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석유 계약업자에게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그들의 석유 지분을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공급의 비상시에는 석유 자원의 수출이 금지된다.</p> <p>석유 계약업자는 석유 계약이 완료되거나 만료된 경우 광업에너지부에 자신의 운영에 따른 모든 석유 데이터를 제출한다.</p> <p>석유 계약업자는 모든 정보와 보고서를 광업에너지부에</p>

	<p>제출한다.</p> <p>광업에너지부는 석유 운영, 환경 및 사회에 관련된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수 있다.</p> <p>국가는 석유 운영의 지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의 지분 참여는 총리에 의하여 승인된다.</p>
조치근거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환경보호 및 국가자원 관리에 관한 법 - 2001년 광물 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법 - 2019년 석유 및 석유 제품 관리에 관한 법 -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1999년 4월 6일자 시행령 제27 ANRK.BK호 -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2016년 4월 5일자 시행령 제60 ANK. BK호 제11조 - 2005년 1월 31일자 시행령 제08 ANK.BK호 - 모래 개발 제한에 관한 2009년 5월 8일자 정부 결정 제29 SSR호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다음의 투자 프로젝트는 관방부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자본금 미화 5천만 달러 이상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수반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장기 전략 보유, 또는 - 기반시설 양허 수반 <p>관방부는 위에 언급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련된 그 밖의 또는 추가적인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p> <p>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의 조건을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60퍼센트의 현지 물자 사용, 또는 - 피고용인의 수 최소 20퍼센트 증가, 또는 - 중소기업 단지에 소재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캄보디아왕국 투자법 - 2003년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 캄보디아왕국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 9월 27일자 시행령 제111 ANK/BK호 - 중소기업 조세 혜택에 관한 2018년 10월 2일자 시행령 제124 ANK.BK호 -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2016년 4월 5일자 시행령 제60 ANK. BK호 제11조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캄보디아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을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캄보디아는 정책 유연성을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4개월의 기간 동안 위에 언급된 의무에 반하여 전에 존재했으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정부 수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고 이 목록에 추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캄보디아는 이 목록의 그러한 모든 유지 또는 추가를 기탁처를 통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그러한 유지 또는 추가는 그러한 통보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3. 이 목록의 각 유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정부수준 요소의 목적상, 국가 행정부는 중앙정부를 지칭하고 하위 국가 행정부는 수도/주, 구(Khans)/시/군 및 동(Sangkats)/면(Communes)을 지칭한다.

다. **의무의 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유보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의무를 지칭한다.

라. **조치내용**은 유보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그리고

마.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지칭하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4.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주해는 이 목록의 캄보디아 유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소상공인·중소기업(MSME)에 부여된 특별 선호 또는 대우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6일자 2015~2025년 산업개발정책 - 2015년 중소기업 진흥 정책 체제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정책안 - 2019년 6월 14일 기준의 투자법안 - 2019년 6월 14일 기준의 특별경제구역법안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보조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p>캄보디아는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캄보디아는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가 개방된 아세안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캄보디아는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모든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6일자 2015~2025년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 - 캄보디아 정부 사각전략 제4기 - 2019~2023년 국가전략개발계획

분야	:	농공업, 지원 산업, 수공업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농공업, 농업, 관광 및 섬유 분야 지원 산업, 문화, 역사나 전통 수공업 및 모든 해당 분야나 산업에 대한 부수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2015년 3월 6일자 2015~2025년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 - 캄보디아 정부 사각전략 제4기 - 2019~2023년 국가전략개발계획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국방, 공공 질서 및 안보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투자자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국가 행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거나 유지된 어떠한 조치 또는 채택될 것이거나 유지될 것인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부동산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장애인 및 소수 민족과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나 선호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전력청(EAC), 캄보디아 중소기업은행(SME 은행), 농업농촌개발은행, 캄보디아 전력공사(EDC), 프놈펜수도공사(PPWSA) 및 그린트레이드를 포함하는 국유기업의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서비스 투자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포함하는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른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거나 유지된 어떠한 조치 또는 채택될 것이거나 유지될 것인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비정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 - 2020년 정부 증권에 관한 법 - 2009년 비정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시행령 - 지분증권 공모에 관한 부령 - 채무증권 공모에 관한 부령 - 파생상품 거래 면허 및 감독에 관한 부령 - 거래 체계에 관한 지침 - 고객 자금 계좌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고객 자금의 예치·인출·결제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 - 국가 경제 개발 정책 - 주식시장 개발 정책 및 전략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국가 행정부 및 하위 국가 행정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캄보디아는 토지의 취득, 소유, 임대, 토지 사용 정책, 토지 계획 그리고 토지 사용의 조건, 토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토지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왕국 헌법 제44조 - 2001년 토지법 - 2010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공에 관한 법 - 2006년 민사소송법 - 2007년 민법 - 장기 임대 또는 경제적 토지 양허에 대한 담보대출 및 권리 이전에 관한 2007년 8월 29일자 시행령 제114 ANKR. BK호 - 2015년 11월 17일자 정부 회람 제08 SR호